



# 목 차

## 제 2 권 특수통관 · 수출 · 환급 · 보세화물 · AEO · 기타

- 특수통관 ..... 19
  - 여행자 휴대품 ..... 21
    - 1. 여행자 휴대물품 세액 계산 ..... 23
    - 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 24
    - 3.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 26
    - 4.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식품의 면세범위 ..... 28
    - 5.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 29
    -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 31
    - 7. 국내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 ..... 33
    - 8. 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 34
    - 9. 애완견 휴대반입 ..... 35
    - 10. 유치된 물품 반송 ..... 36
    - 11. 휴대품 예치 ..... 37
    - 12.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 38
  - 특송물품 · 우편물 및 해외직구 물품 ..... 39
    - 1.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 ..... 41
    - 2. 해외로부터 수취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 43
    - 3.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 45
    - 4.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 46
    - 5. 특급탁송에서의 목록통관 ..... 47
    - 6. 목록통관배제 물품 소액면세 관련 ..... 49
    - 7. 특급탁송물품 통관시 개인정보 요청 ..... 50

8. 우편물이나 특급택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	51
9. 우편물이나 특급택송물품 우리나라 도착 여부 .....	53
10. 인터넷 구매대행시 세관에 신고여부 .....	54
11. 검사시 발생한 물품의 손실 보상 .....	55
12.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 .....	56
13.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 .....	57
14. 외국에서 전자제품 구매시 통관절차 .....	58
15.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 .....	59
16. 도검반입시 제한사항 .....	60
<b>- 이사물품 .....</b>	<b>61</b>
1.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	63
2. 가족동반 내국인의 이사자 기준 .....	64
3.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	65
4. 이사물품 반입기간 .....	66
5. 이사물품 신고자 .....	67
6.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68
7.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 .....	69
8. 이사물품의 수입제한 조건 등 심사 .....	71
9. 이사물품자동차의 통관 .....	72
10.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	75
11. 가족 차후입국에 따른 분할반입 이사물품 통관 .....	76
12.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 .....	77
13.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	78
<b>□ 수 출 .....</b>	<b>79</b>
1. 자가수출신고 방법 .....	81
2. 개인화주의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82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84
4.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 .....	85
5. 수리후 원상태, 위약수출 정정 가능여부 .....	86
6. 견본품 수출절차 .....	87
7.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	88
8. 건설기계 수출통관 절차 .....	90
9. 선박 수출통관절차 .....	91
10. 국내 석재와 모래 수출 요건 .....	92
1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	93
12. 수출물품 미선적시 제재사항 .....	94
13.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95
14.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	96
15.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 .....	98
16. 영문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	99
□ 환 금 .....	101
1. 환급신청인 .....	103
2. 환급 관할지세관 및 변경절차 .....	104
3. 최초 환급신청 절차 .....	105
4. 환급신청 구비서류 .....	107
5. 추가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	108
6.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및 가산금 .....	110
7.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	112
8. 환급대상 수출 .....	113
9.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	115
10.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	117
11. 수출이행기간 .....	119
12.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 .....	120
13. 환급방법 조정 고시 관련 수출이행 기간 .....	121

14. 개별환급제도 .....	122
15. 간이정액환급 .....	123
16. 간이정액환급 전환 .....	124
17.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 판단 기준 .....	125
18. 원상태 수출환급 .....	126
19. 국내에서 구매한 수입물품 수출 후 환급 .....	127
20.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상태 수출 .....	128
21. 덤핑방지관세 환급 .....	130
22.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	132
2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	133
24. 수입후 1년이 경과된 분증으로 기납증 발급 가능여부 .....	135
25. 자율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	136
26. 환급시 부산물 공제 .....	137
27.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	138
28.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	139
□ <b>보세화물</b> .....	141
1.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	143
2. 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	145
3. 적하목록 정정 생략 .....	146
4.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	147
5. 부두보세운송 절차 .....	148
6. 보세운송 도착 후 적하목록 정정 .....	149
7. 과적화물의 보세운송 .....	150
8.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	152
9. 보수작업 .....	154
10. 보세건설장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	156
11.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 선별 및 해제 .....	158

12. 선용품 납품 .....	160
13. BWT물품의 B/L 합병 .....	162
14. 전자공매 .....	164
15.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	167
16. 보세창고 반입정지 .....	168
17.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잉여물품 관련 .....	169
18. 보세공장 반입 물품 반출 절차 .....	172
19.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품 절차 .....	173
20. 보세공장 반입 포장용품 잉여물품 처리 절차 .....	174
21.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구비 여부 .....	175
<input type="checkbox"/> <b>AEO</b> .....	177
1. AEO 제도 .....	179
2. AEO 공인의 혜택 .....	180
3. AEO 공인신청 방법 .....	181
4. AEO 공인 신청서류 보완기간 .....	183
5. AEO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	184
6. 사후관리 .....	185
7. AEO 관리책임자 역할 및 교육 이수 .....	186
8. 변동사항 보고 .....	187
9. 정기 자체평가 실시 .....	188
10.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	189
11. 상호인정협정(MRA) .....	190
<input type="checkbox"/> <b>기 타</b> .....	191
- <b>SOFA · 파르네</b> .....	193
1. 주한미군에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	195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	196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	197
4. 주한미군 이사물품의 통관 .....	198
5. SOFA 면세차량의 양도 .....	199
6. SOFA 면세차량의 양수자 .....	200
7. A.T.A. Carnet란? .....	201
8.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	202
9.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	203
10.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	204
11.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	205
12. 해외로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	206
13.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 .....	208
<b>- 외환 신고 .....</b>	<b>211</b>
1. 외화 휴대 반출 .....	213
2. 해외 유학생 송금 .....	214
3. 수출대금의 회수 .....	215
4. 수입대금 휴대반출 지급 .....	217
5. 제3자 지급 등 .....	218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 .....	219
7.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외화반입 신고절차 .....	221
8. 환전영업자 등록 절차 .....	222
<b>- 기 타 .....</b>	<b>223</b>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225
2.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통계 조회 방법 .....	226
3. 개별업체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 .....	228
4. 권리구제 신청절차 .....	229
5. 관세사시험 .....	230

6. 관세직 채용 .....	232
7. 탐지견 관리요원 채용 .....	234
8. 해양수산직 채용 .....	236
9. 외국 관세율 .....	238
10. 각 국가별 여행자통관정보 등 외국세관 통관제도 .....	239
11. 제주면세점(국내선) .....	240
12. 세관 근무시간 .....	242
13. 직원 조회 .....	243
14. UNI-PASS 이용 .....	244
15. 수하물 기내 반입 허용 및 보안검색 .....	245
16. 리펀드 .....	246
17. 관세사 개업 .....	248
18. 여권 등 물품 분실 .....	250
19. 오류접수 .....	251
20.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	253
<input type="checkbox"/> 부 록 .....	257
※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 .....	258

**목 차**

**제 1 권 FTA · 수입 · 평가감면 · 품목분류**

- FTA 등 특혜관세 ..... 19
  - 1.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 21
  - 2.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 22
  - 3.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24
  - 4.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 ..... 30
  - 5.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 32
  - 6.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34
  - 7.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간 차이 발생 ..... 35
  - 8. 운송요건 ..... 36
  - 9. 양수도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37
  - 10. 수리·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 38
  - 11. 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 ..... 39
  - 12.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 ..... 40
  - 1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 42
  - 14.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 43
  - 15.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 44
  - 16.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 45
  - 17. 사후 검증 ..... 46
  - 1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48
  -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 49
  - 20.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 50
  - 21. 인증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면제 여부 ..... 51
  - 22. 인증수출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재인증 필요 여부 ..... 52
  - 23.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 53

2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	54
2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국송장 관련 기재요령 .....	55
26. 한-아세안 FTA 환적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	56
27. 한-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 .....	57
28.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방법 .....	58
29. 한-EU FTA 환적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	59
30.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	60
31. 한-중 FTA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C/O 인정여부 .....	62
32. 한-중 2017 HS코드 개정에 따른 C/O 발급기준 .....	63
33. 농축수산물 간편 FTA 원산지 인정제도 .....	64
3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66
35. APTA 원산지 결정기준 .....	67
<b>□ 수입통관 .....</b>	<b>69</b>
<b>- 일 반 .....</b>	<b>71</b>
1. UNI-PASS .....	73
2. 통관고유부호 .....	74
3. 수입신고 세관 .....	75
4. 납세의무자 .....	76
5. 수입자의 자격요건 .....	77
6. B/L 분할신고 .....	78
7. 수입신고 시기 .....	79
8.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81
9. 수입신고 취하 .....	83
10. 사전세액심사 .....	84
11. 신고지연 가산세 .....	85
1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86
13. 수입 요건 및 절차 .....	87
14.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	88

15.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90
16. 샘플 수입신고 .....	91
17.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	92
18. 성인용품 수입 .....	93
19. CITES 물품 수입 .....	95
20. 곤충류 수입 .....	96
21. 애완동물 수입 .....	96
22. 전갈 및 독거미의 수입통관 .....	97
23. 총포류 등 수입 .....	98
24. 육류 수입신고 .....	99
25. 식용 활어 수입 .....	100
26. 커피, 차류 등 수입 .....	101
27. 식용 식물류 수입 .....	102
28. 쌀의 수입통관 .....	103
29. 과일 수입 .....	104
30. 화장품류 수입 .....	104
31. 전기용품 수입 .....	105
32. 의료용구 수입 .....	106
33. 의약품 수입 .....	107
34. 선박 수입 .....	107
35. 승용자동차 수입 .....	108
36. 중고승용자동차 수입 .....	109
37. 오토바이 수입 .....	112
38.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	113
39. 수입물품 검사 .....	116
40. 고철 및 비금속 설의 수입 .....	117
41.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관리 .....	118
42. 수입신고필증 진위확인 .....	119
<b>- 징 수</b> .....	<b>121</b>

1. 보정 .....	123
2. 수정신고 .....	124
3. 내국세 가산세 .....	125
4. 관세납부방법 .....	128
5. 납부기한 및 체납 .....	129
6.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	130
7. 과오납환급 .....	131
8. 위약환급 .....	133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34
10. 징수최저한 금액 .....	135
11. 관세납부제도 .....	136
12. 담보의 종류 .....	137
13. 포괄담보 .....	139
14. 담보제공대상 .....	141
15. 신용담보업체 지정 .....	143
16. 월별납부업체 지정 .....	145
17.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	146
18.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	147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	148
20.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150
21. 체납자의 출국 .....	153
<b>－ 남북교역 .....</b>	<b>155</b>
1.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 품목 .....	157
2. 북한산물품의 요건 .....	158
3.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159
4. 북한산물품의 원산지표시 .....	160
5. 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161

<b>－ 지식재산권</b> .....	163
1. 병행수입이란? .....	165
2. 병행수입 가능여부의 확인 .....	168
3. 위조상품 수출입 처벌 .....	169
4. 상표권 등록 방법 .....	170
5.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	172
6. 상표법 위반 .....	177
<b>－ 원산지</b> .....	179
1. 원산지증명서 제출 .....	181
2. 원산지 판정기준 .....	182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183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	184
5. 원산지표시 면제 .....	185
6. 원산지표시 방법 .....	187
7.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 .....	190
8.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판정제도 .....	191
9.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	192
10. 해외임가공물품 원산지판정 .....	193
11. OEM 방식의 원산지 표시 .....	194
12.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	196
13. “COO :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	197
14.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	198
15. 조립국을 원산지국과 같이 표기한 경우 .....	199
16.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	200
17.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	202
<b>－ 유통이력 관리</b> .....	203
1. 유통이력은 왜 하나요? .....	205
2. 유통이력신고 방법 .....	206

3. 유통이력대상물품 ..... 207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 208  
 5. 유통이력 신고일자 ..... 209

□ **평가 · 감면 · 사후관리** ..... 211

1. 과세환율 ..... 213  
 2. 잠정가격신고 제도 ..... 214  
 3.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 215  
 4.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 216  
 5.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여부 ..... 218  
 6. 무형물 과세 여부 ..... 220  
 7.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 221  
 8. 보상차원의 가격할인 인정 여부 ..... 222  
 9.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 223  
 10.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 225  
 11. 생산지원비 과세 ..... 226  
 12. 권리사용료 과세 ..... 228  
 13.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229  
 14.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 230  
 1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231  
 16.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 233  
 17. 관세감면 신청시기 ..... 234  
 18.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 235  
 19. 서울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236  
 20.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 ..... 237  
 21.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증 물품) ..... 238  
 22. 장애인용품 면세 ..... 239  
 23. 장애인용 차량 면세 ..... 240  
 24. 정부용품 면세 ..... 242  
 25. 특정물품 면세 ..... 243

26. 소액물품(건품) 면세 .....	244
27.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후 재수출) .....	246
28.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제3국 재수출) .....	247
29.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 .....	248
30. 재수출감면세 .....	249
31. 재수입면세(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250
32. 해외운송 중 재수입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251
3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수리물품) .....	252
34.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	253
35. 농민이 수입하는 농업용 드론 면세 여부 .....	255
36.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	258
37. 관세감면물품 용도의 사용 .....	259
38. 용도의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	260
39.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61
40.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의 사용 승인시 가산세 부과 여부 .....	262
41. 환급받은 관세 추징 후 재수입면세 신청가능 여부 .....	263
42. 재수출 불이행 추징이후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264
44.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의 사용시 납세의무자 .....	265
45.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변경 및 관리대장 비치 장소 .....	266
45. 사후관리 대상 의무사항 안내 .....	268
46. 사후관리 제외대상인 품목당 1,000만원의 의미 .....	269
□ 품목분류 .....	271
1.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	273
2. HS 2017 제6차 개정 주요내용 .....	274
3.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	275
4.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와 변경절차 및 결정사항 효력 .....	278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분류협의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 .....	279
6. 정보기술협정(ITA) 세율 및 혜택 .....	281

7. 제비추리·삼겹살의 품목분류 .....	282
8. 돼지족의 품목분류 .....	283
9. 닭고기의 부위별 품목분류와 관세율 .....	285
10. 어류의 식용 설육의 품목분류 .....	286
11. 쇠고기·수산물·채소 등의 염장 기준 .....	287
12. 달걀의 품목분류 .....	288
13. 소의 곱창과 양·천엽의 품목분류 .....	289
14. 고추(신선·냉장, 냉동, 건조)의 품목분류 .....	290
15.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	291
16.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	292
17.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	293
18.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	294
19. 쌀가루와 전분이 혼합된 조제품의 품목분류 .....	295
20.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296
21. 참깨분의 제1208호 vs. 제2008호 분류기준 .....	297
22.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298
23. 식용유의 품목분류 .....	299
24. 사골국물, 멸치액젓 및 사골곰탕의 품목분류 .....	300
25. 어묵(Fish cake) 및 어란(캐비아 대응물 등)의 품목분류 .....	301
26. 멸치가 함유된 건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	302
27. 설탕(Sugar)의 품목분류 .....	303
28.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	304
29.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빵 및 쿠키의 품목분류 .....	305
30. 삼투탈수 후 건조한 열대과실의 품목분류 .....	306
31.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	307
32.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 품목분류 .....	308
33.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의 품목분류 .....	309
34.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종류 .....	310
35.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	311

36.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	312
37. 치약이나 가글류의 품목분류 .....	313
38. 애견용 샴푸, 의류 및 사료의 품목분류 .....	314
39. 바이오디젤 관련 제품 품목분류 .....	315
40. 수정테이프의 품목분류 .....	316
41. 콤포지션 레더 vs. 합성피혁의 차이점 .....	317
42. 아이튠즈(i-Tunes) 카드의 품목분류 .....	318
43.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	319
44.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의 품목분류 .....	320
45.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	321
46. 양산의 품목분류 .....	322
47. 자기와 기타 도자기(도기, 석기)의 구분 .....	323
48.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	324
49. 플렉시블(Flexible) 호스의 품목분류 .....	325
50. 3D 프린터의 품목분류 .....	326
51.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	327
52.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	328
53. SSD(솔리드 스테이트)의 품목분류 .....	329
54.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	330
55. 드론의 품목분류 .....	331
56.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	332
57. 이륜 전동 운송장치의 품목분류 .....	333
58. 삼륜자동차의 품목분류 .....	334
59. 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카트의 품목분류 .....	335
60. 셀카봉의 품목분류 .....	337
<b>□ 부 록</b> .....	339
<b>※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b> .....	340

**특 수 통 관**



# 여행사 휴대품

## 1 여행자 휴대물품 세액 계산



- 해외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 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메인화면 오른쪽 중앙부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구입물품명과 미화 600불을 공제한 후 구입가격을 입력하면 미리 납부하실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의류의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의류의 간이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납부하실 세금이 됩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관세법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 2 여행자유대품 면세범위

○ 일반 여행자가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여행자유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600
- 술 1병(1ℓ 이하로서 US\$ 400이하의 것 다), 향수 60ml
  - \* 다만, 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 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 켈런 200개비, 엽켈런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 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비거주자(우범여행자는 제외)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50kg이내(40kg이내. 2018.1.1.시행),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

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 함.

-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kg,
  - \* 잣은 1kg, 쇠고기, 돼지고기는 각 10kg, 기타는 품목당 5kg
  -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서 10품목이하이며 모발재생제(100ml)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9조(면세범위),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21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 참고사항

- 녹용은 검역후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만 과세통관 가능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6m)까지 과세통관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범위 적용
- 면세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불이행 할 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반복적일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 3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 통관절차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단일한 세율로 정해놓은 세율입니다.

-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 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 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 600)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다만,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인의 면세범위인 US\$ 600만 공제한 후 과세통관합니다.**
- **세금 부과시,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고세율품목부터 면세 처리),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상업용물품, 고가품,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제외)

○ 품목별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라. 로열젤리	55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50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50 27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30 25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20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관세법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 4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얼마나 반입할 수 있나요?

### 답변

-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여행자가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관련고시에 규정이 없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용 합니다.**
- 따라서 여행자가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단,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까지는 면세(과세가격은 1인당 면세한도에 포함)를 하고, 6병 초과분에 대하여는 요건확인 대상이므로 요건확인을 받아 정식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4조(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제19조(면세범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 5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 신고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3조(휴대반출신고물품), 제54조(휴대반출 신고 및 확인)

※ 참고사항

- 아래 해당하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등의 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계약상이 감면 및 재수출 및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환급·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은 제외)

##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로서, 입국시 재반출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세금의 납부없이 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이라 함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일시반입을 허용합니다.
-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0장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의통관)

## 7 국내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

-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할 때,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
  - ①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600불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 후,
    -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 시내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시내면세매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나, 교환된 물품은 직접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최초 구매한 때와 동일하게 해외로 출국 시 출국장의 인도장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화 600불 초과하는 면세물품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이미 과세통관한 물품(입국검사장에서 반출) 및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교환·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 참고사항

- 현행규정상 보세판매장에서 구매가격이 미화 600불 초과물품의 교환·환불은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시 과세통관된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8 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을 면제**하며,

○ 아래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400이하)

② 쉐럴 200개비 또는 엽켈런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③ 향수 60ml

※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여행자는 제외합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9조(면세범위)

※ 참고사항

○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 예 : 주류 2ℓ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 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ℓ 이하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 9 애완견 휴대반입



- 해외에서 구입한 애완견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애완견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 합격을 하여야 수입통관을 할 수가 있으며,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역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입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031-467-1700)

- 검역에 통과한 경우 현장에서 면세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상용 애완견의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가 아닌 경우 수입통관부서에서 정식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 10 유치된 물품의 반송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일반여행자물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 반송, 기내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상용품 과다반입자(보따리상)의 경우는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B/L반송신고라 함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6조(반송심사)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7장(반송)

## 11 휴대품 예치



○ 반입할 의사가 없는 여행자 휴대품을 공항에 맡겨 놓고 싶습니다.



### 답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관세법」 제206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될 때에 유치 또는 예치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7조(유치·예치 등)

## 12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답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격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 3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후납부 및 면세점 구매물품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특송물품 · 우편물 및  
해외직구 물품**

## 1 우편물 및 특급택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



- 우편물이나 특급택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수령할 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페이지의 표 참고)
-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물품은 위 소액면세 기준과 관계없이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상담사례 5번 특급택송에서의 목록통관 내용 참고)
- 아래의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식물방역법(농림축산검역본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지방경찰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식약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동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식약처)
  - 통신비밀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금지·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축산물	,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품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 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 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 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 약( 한 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약사법 대상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 寶, 春寶, 青春寶, 強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을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킬런 엽킬런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2 해외로부터 수취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 해외에서 발송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관하게 되나요?

### 답변

-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 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 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임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 통관하거나, 현장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통관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현장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우편물 통관시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통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간이통관신고/해당세관홈페이지에서 간이통관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① 해당 **통관우체국을 방문하여 통관신청** → 일반적인 품목인 경우(세관장확인대상 등이 아닌 경우), 세관직원은 수취인과 물품을 확인한 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 처리합니다. 수취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우체국에서 세금 수납후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 모바일(<http://m.customs.go.kr>), 우편, 팩스(032-720-7491, 7492) 또는 이메일(minwon9@customs.go.kr)을 통하여 원격지 통관신청 → 통관접수 후 세관직원은 해당물품을 검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간이통관 처리하여 우체국에 전달합니다.
    - ③ 관련 제세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고지서로 은행방문수납, 국제우편물품센터 방문하여 납부)
  - 우편배달부 납부(우편배달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수령)
  - 인터넷 납부(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 납부(카드로텍스 <http://www.cardrotax.or.kr>를 이용하여 납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선물 등)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은 총 과세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물품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 제외)
-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간이세율표 상담사례 3번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표 참고)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2항제1호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현장면세), 제9조(현장과세),  
제14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①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⑤ 과세가액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③, ④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일반수입신고대상이 아닌 우편물의 경우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통관신청 방법  
: <http://m.customs.go.kr> > 우편물통관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
-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  
: <http://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본인 휴대폰 인증 >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 입력 > 조회 >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후 전송
-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4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4 외국에서 오는 특급택송물품 통관절차

- DHL, Fedex, UPS 등 특급택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 답변

- 특급택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급택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다만, 특급택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 제외)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같음(목록통관 특송물품)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 특송물품)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 5 특급택송에서의 목록통관



-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특송화물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면세되는 상용건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되나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한·미 FTA에서 **미국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대상(관세면제)**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물품가액은 '미국 내에서 지급한 금액'(예 : 상품가격과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말하며 특송업체에 지급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일반수입신고대상)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

6 목록통관배제 물품 소액면세 관련



- 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꼭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록통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송화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상기 소액면세 제도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또한 수입신고 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령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 7 특급택송물품 통관시 개인정보 요청

- 해외직구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답변

- 개인이 수취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동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란에 납세의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
- 따라서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방법으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개인통관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 8 우편물이나 특급택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과 담배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 범위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주류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 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담배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되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쉐련(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 옆켄련 50개피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 기타담배 250그램

※ 참고사항

-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경우와 달리 **여행자휴대품**으로 아래의 물품을 반입 시 모든 세액이 면제됩니다.
  - 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하)
  - ② 쉐련 200개비, 옆켄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령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9 우편물이나 특급택송물품 우리나라 도착 여부



- 해외에서 친구가 선물을 보냈다는데,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에는 도착했나요?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우편물의 배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은 우체국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상태 및 도착여부는 통관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국제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 또는 인터넷에서 EMS행방조회를 통해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우체국 (<http://ems.epost.go.kr>) 접속 후 EMS번호 입력
  - \*EMS가 아닌 일반우편물의 경우에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 하에 개냥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 책임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우편물의 보관 및 재고관리 또한 우체국에서 합니다.

▶ 특급택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이용한 경우

- 특급택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 관세청홈페이지 >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송장번호(트래킹넘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업체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배송관련 문의는 특급택송업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10 인터넷 구매대행시 세관에 신고여부



- 인터넷으로 구매대행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특별히 신고를 하거나, 통관시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 답변

-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 [www.nts.go.kr](http://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 2)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044-200-4465, [www.ftc.go.kr](http://www.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하며,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상기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려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매대행(수입대행)의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이며, 물품은 국내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11 검사시 발생한 물품의 손실 보상



- 통관과정에서 세관검사로 인해 구매한 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 보상금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가능)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2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



-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2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답변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세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13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



-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구매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 14 외국에서 전자제품 구매시 통관절차



-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해외에서 노트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면제)] 에 의거하여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승인의 면제요건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항에 의거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하여 전파법에 따른 인증 등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관련하여 요건구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4 / rra.go.kr)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061)338-4937 / www.ekcc.go.kr)

###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면제), 관리규정 별표4(수입승인의 면제)

## 15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



- 해외 사이트에서化妆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 「화장품법」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의약외품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에 해당 될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관련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별표1

「화장품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16 도검반입시 제한사항



- 도검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 답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경우 도검의 통관은 세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 총단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가 경찰청장 허가대상인 도검류를 반입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 따라서,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개별물품의 총단법 단속대상 여부와 허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 물 품

## 1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 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 자(예 : '12.1.1 거주이전 출국⇒12.12.31 거주이전 입국)
  - 2)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 **“단기체류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미만 거주한 자
  - 2)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미만 거주하려는 자

※ 유의사항

-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입국일자로 계산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3조(기간의 계산)

## 2 가족동반 내국인의 이사자 기준



- 내국인이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이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 답변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예 : '12.1.1. 거주이전 출국 ⇒ '12.12.31. 거주이전 입국) 또는 가족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자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3조(기간의 계산)

### 3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 이사자의 해외거주기간은 어떤 서류로 확인합니까?



#### 답변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경우 여권상의 출국일자에서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을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동 서류에 의하여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주이전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터뷰 또는 전화 등으로 고용계약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귀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실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 유의사항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증』(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4 이사물품 반입기간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 유의사항

-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제6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 5 이사물품 신고자



- 이사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는데 직장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이사물품 및 단기체류용물품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단기체류자, 그 동반가족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신고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 6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이사물품을 통관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답변

○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사물품반입내역서(세관에 비치 또는 관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포장명세서
- ③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 ④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 ⑤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⑥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⑦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 (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⑧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수입신고서 및 이사물품반입내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함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 7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모두 관세를 면세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금부과대상 :

- 필수과세대상물품(6조)
- 이사물품으로의 인정수량 초과물품(4조)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별표1)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거주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되며(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3개월 미만 사용하던 물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과세대상물품
  - 선박·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이사자 등이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4조)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별표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 유의사항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경위서를 제출하여야함

[별표 1]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p><b>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b></p>
<p><b>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b>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 (Kit Car) 등</p>
<p><b>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b>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p>
<p><b>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b>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p>
<p><b>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b></p>

8 이사물품의 수입제한조건 등 심사



○ 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까?



○ 해당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의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② 식물방역법
- ③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④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 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⑥ 가축전염병예방법
- ⑦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⑧ 양곡관리법
- ⑨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⑩ 화학물질관리법
- ⑩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⑪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⑫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⑮ 폐기물 관리법
- ⑯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 ⑰ 방위사업법
- 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 9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이사자일 것

구 분	이 사 자		확인방법
우리나라 국민 (영주권자제외)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후 귀국하는 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 하는 자	여권상의 출입국일자 (출국일 ~ 입국일 기준)
영 주 권 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영주귀국자 포함)	가족을 동반하고 6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자	여권무효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증·고 용계약서 등
외 국 인 (시민권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동차 요건(전제조건)

- 이사자의 입국일(영주권포기일, 외국국적 상실일 등)로부터 6월 이내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홈카·캠핑카 등 제외)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함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은
  - ①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 ②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시에는 그 입국일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 ⇒등록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의 기간

- ※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Card), 소유증명서(Title) 등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가. 모든 자동차 과세(단,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  
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자가 반입할 경우 면세)

- ※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회사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님

나.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2017년 현재기준)

○ 승용자동차

- 과세가격 × 약26.52%(배기량 1,000cc 초과)
- 과세가격 × 약18.8% (배기량 1,000cc 이하)

○ 이륜자동차

- 과세가격 × 약26.52%(총배기량 125cc 초과,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 과세가격 × 약18.8%(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과세가격 산출방법

○ 승용자동차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을  
체감후 잔존율을 적용, 계산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제작년도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단, 전소유주의 최초 자동차등록일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등록일 적용가능)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

라.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접속->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이산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 유의사항

가. 자동차는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타인명의 불가)

○ 등록 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나.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더라도 세관통관 후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면제 여부 등을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자동차를 반입함이 필요

○ 자기인증 : 자동차 안전연구원(031-369-1100, 369-0274~5)

○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032-590-5000)

다. 승용자동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시험연구소로 확인(1577-0990)

10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 이사물품을 집 근처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까?



○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 세관으로 보세운송 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울세관
- ② 인천세관
- ③ 북부산세관
- ④ 대전세관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 유의사항

- 보세운송의 경우 별도로 운송비용이 소요되며, 세관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창고 보관료가 발생함
- 이러한 운송비용 및 창고 보관료 등은 사인(私人)간의 계약관계로 관세청(세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님

## 11 가족 차후입국에 따른 분할반입 이사물품 통관



- 해외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다가 남편과 부인의 이사물품을 별도로 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이사물품은 세대주가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세대주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신고함이 원칙이므로, 남편과 부인의 이사물품을 별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족의 사정에 의하여 부인과 자녀가 먼저 귀국한 경우 부인명의로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으나 통관지 세관에서는 동반가족 내역을 전산에 등록·관리하며, 남편 귀국 시에는 먼저 귀국한 부인의 이사물품 면세내역을 조회하여 이사물품이 이중으로 면세 통관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 12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



-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가족이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대 갖고 올 수 있는지요?

### 답변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로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 13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 외국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컴퓨터서버와 라우터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 하는데 면세가 가능합니까?

#### 답변

-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 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사업상 사용했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별표1」

수

술



## 1 자가수출신고 방법



-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화주(수출물품의 화주와 완제품 공급자를 말함)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에 접속 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청시 신고자부호도 함께 신청하여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신고자부호를 부여 받은 후 수출신고는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업무처리>신고서작성>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 2 개인화주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해외직접 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 신고하고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개인이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먼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인 부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사용 신청
  -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세관)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거치게 되며,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계약상이 환급대상물품(해외직접 구매물품 반품 포함)은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 수출신고 예정 세관의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반품을 위해 개인이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한해 보세구역 반입없이 세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 허용
- 세관 방문시 수출신고와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신청을 하면, 세관은 해당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출통관> 신고서 작성> 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수출신고 작성·제출
    - 첨부서류(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는 PDF 등으로 변환하여

수출신고서에 첨부 가능

- 수입신고내역은 인터넷 통관포털(자사실적)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입통관 > 신고서 작성 > 과오납및위약환급신청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
    -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는 환급 신청한 세관에 제출
    - ※ 수출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인터넷 통관포털(자료실)에 등재된 업무매뉴얼 참조
  - 수출신고필증 교부받은 후, 선적지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을 선택하여 개인화주(수출자) 책임하에 운송합니다.
    - 수입시 이용한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EMS) 이용하면 편리함
  -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하며, 미적재시 과태료(건당 10만원) 부과되고 수출신고가 취하됩니다.
    - 포워더 또는 우체국 등이 세관에 적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포워더나 우체국에 제공하여야 함.
- ⇒ 세관은 적재확인 이후 신청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거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다음의 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자 본인이나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부호를 발급받아야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7'+ 숫자일련번호 4자리)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세관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출통관> 신고서 작성> 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수출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 4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

○ 수출신고한 내역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자율정정”이라 함은 관세청장이 정한 [별표10]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율정정이 제외되는 항목은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물품상태, 목적국, 환급신청인, 품명, 모델·규격,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적재의무기간, 적재항, 적재예정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등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항목을 제외 하고는 자율정정이 가능하며 구매자부호도 자율정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자율정정이 아닌 수출신고를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제2항, 별표10

## 5 수리후 원상태, 위약수출 정정 가능여부



- 원상태(위약)수출로 신고해야할 사항을 실수로 일반형태수출로 신고하여 선적이 끝났는데 원상태(위약)수출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가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였고,
  - 동시에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선적 완료 후 원상태수출 및 위약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합니다.
- 참고로, 원상태 수출과 위약수출은 수출신고시 서류제출 대상으로서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출신고가 수리되며 차후에 수출시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만이 환급지세관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제3항제5호(신고사항의 정정)

## 6 견본품 수출절차



- 해외에서 수출 상담차 견본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제출로 수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물품은 제외)
- 따라서, 환급대상물품이나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 중 해외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휴대반출시에 휴대반출신고서나 송품장 등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간이수출신고), 제43조(휴대반출견본품의 특례)

## 7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 중고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

### 답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로 수정하며,
    -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관세청 지침(통관기획과-1027, 2006.2.27)

## 8 건설기계 수출통관 절차



- 사용하던 지게차를 외국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폐차 말소된 경우 수출신고 불가(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해외임대 등 일시반출 건설기계는 말소등록 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2항, 제3항

#### ※ 유의사항

- 수출자가 해외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02-3406-1114)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함

## 9 선박 수출통관절차



- 선박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 신조선 수출시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③항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 10 국내 석재와 모래 수출 요건



- 석재와 규사(모래)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신고 절차나 요건이 있는가요?



- 국내산 석재 및 규사(모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에서 금지하는 품목과 제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16.11호(화강암-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제2516.12호(화강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제2516.20호(사암)의 자연석은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05호의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중 규산분( $\text{SiO}_2$ )이 90%이하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17호[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그 밖의 벨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드로스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 제2517.10호(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와 제2517.41호(대리석의 것)는 구석, 싱글과 플린트는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공고 별표 1

## 1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수출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경우에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휴대반출 또는 우편발송한 후 적재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구를 통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휴대택송물품의 적재관리), 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 12 수출물품 미선적시 적재사항



-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고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77조(과태료)제4항제2호,  
동 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 13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수출신고서를 분실했는데 재교부 가능한가요?

## 답변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UNI-PASS를 통하여 신고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고,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 14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운임·보험료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방법(순차적으로 적용)

가. 당해 건에 대해 계약하였거나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신고

\* CIF가격 - (운임 + 보험료 +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 = FOB가격

\* DDU가격 - (운임 + 보험료 + 수입국내운송료, 보관료 + 기타 운송 관련 소요비용) = FOB가격

## 운임계산시에는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수입국내운송, 보관료 및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을 포함

## CIF조건은 수출자가 바이어명의로 보험을 들어 운송증서와 보험 증권을 함께 바이어에게 인계하는 조건이므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됨. 따라서, 이런 조건은 반드시 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며, 수출자가 보험을 부보하지 않는다면 CFR(C&F)로 결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DDU, DDP조건은 수출자 책임이므로 보험 미부보 가능)

나. 년·월간 단위로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선적으로 중량(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동일·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미선적시 선적 예상물량 기준)

\* 벌크(Bulk)화물의 미선적, 항공화물로서 중량 및 용적(CBM) 체크 미실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

다. 항공사·선박회사·포워딩업체 및 보험사에서 실제 적용하는 운임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

- \* 운임 : 중량, 용적 기준 (귀금속등 고가품, 육류등 부패가능물품은 별도 가산요금이 있을 수 있음)
- \* 보험료 : 결제금액 기준 (보험 부보조건에 따라 보험료 금액 상이)

라. 신고한 운임·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운임·보험료의 차액이 물품 신고가격(FOB)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 (다만, 그 차액이 1만원 이하는 신고생략 가능).

- \* 예를 들어 FOB금액이 10,000불이고 운임을 1,000불로 신고했으나 청구된 운임이 1,100불이면 정정하지 않아도 되며, 청구된 운임이 800불이거나 1,200불인 경우 등 신고운임과 청구운임의 차액이 FOB가격의 1%를 초과하면 수정신고하여야 함.

마. 신고서(송품장) 1건에 여러 란(품목)이 있고 총중량 대비 운임과 총 결제금액 대비 보험료를 입력한 경우, 란별 FOB금액 계산시에는 란별 순중량(합계) 및 결제금액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란별 운임 및 보험료를 배분하면 됨. 끝.

- \* 통관프로그램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 시달(청 통관기획과-1005호, '08.2.26)

## 15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



○ 수출신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신고인은 P/L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세법 제12조 및 영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의해서도 보관가능 합니다.
- 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자료를 보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관세법령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목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 16 영문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 화주 및 수출자 등 신고인이 영문으로 된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영문수출통관증명서(영문수출신고필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 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영문수출통관 증명서 발급 신청시, 관세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당 400원)

##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학

금



## 1 환급신청인



○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 환급신청인은 아래에 해당되는 자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되지만,
  -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 제조자
  -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 : 수출자

-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가 수출물품 제조자가 되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1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환급신청인)

## 2 환급 관할지세관 및 변경절차



○ 환급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답변

○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합니다.

○ 환급신청기관 변경

-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별제 제2호 서식)를 관할지 또는 변경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 가능)

※ 환급신청이 안 되는 세관

- 김해세관, 국제우편세관(인천, 부산), 김포세관, 고성세관
- 분증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 가능 (단, 김해세관, 국제우편세관(인천, 부산), 김포세관, 고성세관 제외)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 3 최초 환급신청 절차



○ 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환급금계좌를 통보 후(서류제출),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하고
  - 수출물품명,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UNI PASS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절차
  1. 환급금계좌통보서 제출(다음 각 호 서류 첨부하여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2.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제출(인편 또는 우편)
    -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첨부
  3. 환급신청 및 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UNIPASS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류 제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내지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 4 환급신청 구비서류



○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답변

○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별환급신청 기준)

- 환급신청서
  - 수출사실확인서류 : 수출신고필증,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등
  - 소요량 계산서류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이하 '기납증'), 분할증명서(이하 '분증')
  -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 ⇒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사실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간이정액환급신청건의 경우 환급신청서와 수출확인서류와 함께 위탁가공 계약서,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함)만 제출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확인서류와 위탁가공계약서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2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 5 추가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 추가환급신청 대상과 추가환급신청기간은?

### 답변

○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추가환급신청대상

1. 일괄하여 환급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 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정된 관세 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정된 경우
3.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추가환급신청 서류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추가환급시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 6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및 가산금



○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는?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 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자진신고 제외 대상

-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 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기간 및 가산금

- 자진신고는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10으로 함. 단 환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직권추징인 경우 가산금은 1일 10만분의 39로 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제2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내지  
제27조(자진신고기간)

## 7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무상공급 받아 자동차용 램프를 생산·수출하다가 그 금형 자체를 다시 수출했을 때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나요?

### 답변

- 환급대상원재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원재료
-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물리적으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 않는 물품
  -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공구, 사무용품의 설비용품
  - 수출물품의 작업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연료, 압착가스, 윤활유, 절삭유등의 소모품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하는 물품
-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수익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 8 환급대상 수출

○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무상수출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정)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보세구역(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의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과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는 경우

- 기타 수출로 인정되는 것 :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 공급, 원양 산업 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한 수출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 제1항

## 9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답변

-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 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 감시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즉시심사건은 서류제출 생략)
- **발급대상**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보세창고에 반입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 보세판매장에 반입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첨부서류**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제3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  
서류)

## 10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는 언제, 어떻게 발행하는 건가요?

## 답변

-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한 후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품을 적재 한 후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발급대상**
  - 외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 공급
  - 수산업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해수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원양어업협회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 시 당해 선박(항공기)에 남아 있는 유류
- **첨부서류(다음 중 1개의 서류)**
  1.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원양어업협회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
  3.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시
    - 가. 내항자격전환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수출 등)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 등)제4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및  
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 11 수출이행기간



○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답변

-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관세법상 수출인 경우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국내 외화판매·공사 또는 공급의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수입”의 기준일은 수입신고수리일, 수리전반출승인일, 즉시반출신고일,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
- 선수입·후수출
  - 수출이행기간은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재료의 수입일과 제품의 수출일 간에는 원칙상 선수입 후수출이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나, 수출이행기간 기산일을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운영함에 따라 제품의 수출신고수리일과 동월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선수출 후수입 인정)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1항 내지 제2항

## 12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



-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왜 중요한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 답변

-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정액환급률표 적용시(간이기납증 발행)에는 정액환급률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 기간등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바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거래일은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이 되며,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이 됩니다.
  - 만약,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여백에 실거래일과 확인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 참고로,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납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자 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및 제13조(정액환급률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13 환급방법 조정 고시 관련 수출이행 기간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조건 선수출 후수입이 배제되는 건가요?

## 답변

-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 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본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여 단축배제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규정에 따라 '13.7.15.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수출이행기준일은 '13.7.31.)에 '13.7.31. 수입신고수리된 원재료(수입신고 필증)를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 동월 말일 수입신고필증까지 환급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동월 기준 선수출 후수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 14 개별환급제도



○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대해 적용되나요?

### 답변

○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 적용대상

- 대기업자 또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계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 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및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 15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에서 책정·고시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으로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물품 생산자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
  - 매년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물품
- 적용제외물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생산한 물품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 물품
  -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물품
  - 수출(공급)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 하드웨어의 생산없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공급)되는 물품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16 간이정액환급 전환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환급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6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 17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 기준



-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이었을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간이정액 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사안에 대한 지침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통보(세원 심사과-115, 2013.01.08)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 18 원상태 수출환급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수출신고시 서류제출 신고)
-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2호

## 19 국내에서 구매한 수입물품 수출 후 환급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는 누가 되어야 하며 수출절차와 관세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수출신고시 “제조자”란에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을 제조·가공없이 수입 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다면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제조 자는 “미상”으로 하고 제조자의 통관공유부호는 “제조미상 9999000”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써 반송신고가 아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유상수출인 경우 거래구분을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표기하 여야 합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양도받은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수출 등),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 20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상태 수출



-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원상태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원상태수출인 경우 2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따라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되어도 원상태 수출을 가능하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의 원상태 환급신청시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와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제사유서에는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하고 “증빙자료명”에는 입증자료명을 간략히 기재하며 단축배제 받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증빙자료에 대한 특정양식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동시행 규칙 제9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 21 덤핑방지관세 환급



-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이 되나요?

### 답변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데,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 목적
  -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

## 22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 고세율원재료로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관세등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양허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품목 및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중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으로서
  - 수출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고세율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환급(기납증 포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세율 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겠다는 사실을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 ②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 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 ③ 그 밖에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조장 관할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하였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제조·가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 후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부.
- ② 각서 1부
- ③ 기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등)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및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 2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거래 인정서류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2. 양도일자 확인서류

-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등기부

## 3. 소요량계산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

-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거래 인정서류

- 내국신용장
-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함정함)
-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 2. 양도일자 확인서류(상기 기납증 양도일자 확인서류와 동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48조(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및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 24 수입후 1년이 경과된 분증으로 기납증 발급 가능여부



-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

## 25 자율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려고 할 때, 소요량산정방법은 6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소요량산정방법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량 산정방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위에 기재한 6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선택이 제한됩니다.
  -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불가
  -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함.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 26 환급시 부산물 공제



- A 회사는 원피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인 Grain Leather를 생산하는데 Grain Leather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Split Leather의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Grain Leather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중에서 부산물인 Split Leather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 또는 자가사용에 한하여 공제하며, 폐기 또는 멸각의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산물공제비율 산출공식

$$\text{부산물공제비율} = \frac{D}{AX \frac{C}{B} +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원재료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공제비율 산출

## 관련법령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6조(부산물 관리)

## 27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중 1개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라인이 신설되었을 때 새로운 생산라인에 대하여 기존에 받았던 1회계년도의 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일정기간별(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기간 중 동종의 물품(HS10단위가 같은 물품)을 신공법 등으로 신규 생산하는 경우 신규 생산품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 가능하며, 신규 생산품의 생산이 안정화 단계에 들면 일정기간(1회계년도)별 단위소요량 산정 방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권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 28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할 수 있는 자료과 무엇 인가요?

## 답변

- 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 (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권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2-0...1(손모량의 범위) 제2항

**보 세 화 물**



## 1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 의의
  -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 강화하여 물류당사자의 정책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 원칙
  -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사 및 항공사는 관세청장이 규정한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라 전송항목, 규격 및 작성요령 등을 준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협력하여 적하목록의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사 및 항공사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수출입화물, 반송화물, 환적화물 및 일시양륙화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나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시기
  -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 시기
해상 화물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li> <li>○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li> <li>○ (벌크화물)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전</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li> <li>○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li> <li>○ (벌크·환적화물)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li> </ul>
항공 화물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전</li> <li>○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li> <li>○ (특송화물)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전</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li> </ul>

- 적하목록의 제출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하며,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 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합니다.

○ 품명 작성시 유의사항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인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의 '품명'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다음과 같은 무의미한 숫자·부호나 광의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무의미한 숫자, 부호) 0, 1, 11, A, AB, %, \$, #, @ 등

② (광의어) PARTS, SAMPLE, ACCESSORY 등

-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별표1의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에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행정 제재

-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하여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세부운영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2654, 2011.9.9)

2 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준	예시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광의어)	Sample, Parts,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etc 등
④ 상표(BRAND)	NIKE, ADIDAS, GUCCI, CHANEL, BURBERRY, LOUIS VUITTON 등

- 관세법 제277조제5항에 의해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 별표3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은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표 3.

### 3 적하목록 정정 생략



○ 어떤 경우에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해상 수입화물

- 산물(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용적물품(예 :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항공 수입화물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중량으로 거래되는 물품중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 적하목록보다 실제 물품이 적은 경우로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이후 7일 이내에 부족화물이 도착되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해당 항공기도착 7일 이내에 선착 화물이 있어 병합관리가 가능한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해상, 항공 공히 생략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음

○ 수출화물 : 상이내역이 아래인 경우 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직권 정정 가능

- 용적
-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산물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13조, 제26조, 제45조

## 4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 일반운송업자인데 수출입되는 화물을 운송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답변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려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02-701-1455~8)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 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이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 신규등록시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보세운송업자)

## 5 부두보세운송 절차



-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보세창고에 장치하지 않고 바로 화주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운송하여 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 답변

- 부두보세운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세관에 제출된 물품은 입항전 또는 하선(기)장소 반입전이라도 사전보세운송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을 부두 또는 공항내 하선(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이 가능하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컨테이너 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 보세운송관리에 관한 지침(2004.11.4)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5조(신고시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4항

## 6 보세운송 도착 후 적하목록 정정



- 입항당시 적하목록신고가 잘못되어 보세운송 반출까지 잘못된 중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반입 잡을 때는 제대로 된 B/L 중량으로 반입을 잡았는데 적하목록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 답변

-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적하목록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하목록 정정신청시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서(2부), 사유서, 반입결과이상 보고서,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B/L사본, INVOICE, 포장명세서, 적하목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 7 과적화물의 보세운송



- 본인은 보세운송신고필증상의 20톤으로 알고 운행 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보세운송신고필증에는 물품 개수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실증량은 23톤으로 3톤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분은 밀수가 아닌가요? 또한 면장허위 통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 답변

-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의 차이는 수출자가 총중량 기재시 실측을 하지 않고 추정치로 신고할 경우 신고중량과 실제중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가격 기준이 거래가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나, 거래단가가 중량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순중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밀수입죄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으로 세관에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인 경우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화물 과적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 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됩니다.

- 고객님께서서는 실제중량이 23톤임에도 불구하고 과적에 적발되었다면 차량 무게, 또는 공컨테이너 무게에 의한 과적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청의 보세운송 시스템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시 컨테이너의 번호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의 규격은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규격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컨테이너의 종류가 130여 종류에 달하고 각각의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적재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청의 보세운송 제한 중량인 25톤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과적 중량(40톤)을 고려하여 화물을 적재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5항 제1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표3

## 8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보세창고 반입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예외)

-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축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
  - 부산항·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입니다.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 또는 세관장 인정시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물품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이며 보세창고 반입(외국물품) 장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 특허기간(다만, 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
-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  
 제177조(장치기간) 특허보세구역  
 제183조(보세창고) 제3항, 제4항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제6항

## 9 보수작업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작업승인대상**은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 : HSK 10단위의 변화는 불인정(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

○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타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며,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보수작업대상),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 제19조(보수작업의 한계)

## 10 보세건설장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어떠한 것이 되는지요?

### 답변

-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는 산업시설 시설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및 부대시설 건설용품 등이 있으나 **산업시설 건설기계류 설비품만이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관련 질의회신 사례

- (1) 시설재 및 설비재만 말하고 공사용 장비와 건설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부 관세12652-1947, 80.6.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만을 말한다.
- (2) 기계류·설비품에서 볼트, 너트, 용접봉 등은 보세건설물품에 포함되나, 공구 및 측정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재무부 관세22700-300, 86.5.24)
  -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은 기계류 및 설비품과 이들의 물품에 직접 부착 또는 조립되어 시설에 포함되는 볼트, 너트, 용접봉만이 보세건설물품에 포함되고 시설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구 및 측정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측정기 및 분석용기기는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보세건설물품에 분류할 수 있다.(재정경제원 관세 47000-337, 94.11.23)
  -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 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 후의 제품생산에 공해되는 것일 때는(예 : 3차원측정기, 동력시험기, 분광분석기 등)에는 기계류 설비품인 보세건설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 제4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 11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 선별 및 해제



- 관리대상화물이란 어떤 것이며, 선별기준은 무엇이고, 지정되면 그 다음 진행 절차는 무엇이며,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또한 검사 비용은 왜 화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 답변

-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 기능으로서 핵물질,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 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선사·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고,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수행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은 세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호, 불법·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의한 위험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관세청 대외비 사항임을 양지하시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사·항공사가 제공하는 적하목록상 업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품명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다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상화물 선별에 따른 세관검사비용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지정장치장 반입·보관에 따른 보관료 등 일반 장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부정무역을 일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국가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향후 갈수록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해 한정된 세관검사 인력으로 불법·부정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장검사가 필요 없는 컨테이너검색기의 적극 활용 등 과학적인 검사체제를 통해 수입화주들에게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의 검사)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선별기준) ~ 제12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 12 선용품 납품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납품하려고 할 때,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요? 또 행정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 선(기)용품 공급업의 세관 등록절차와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요건

- 가.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할 것
- 다.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라.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될 것

#### 2) 영업등록 구비서류

- 가. 영업등록(갱신)신청서(서식 제1호)
- 나. 임원명부(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 라.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물품공급업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물품공급업신고필증”

#### 3) 물품공급자(외국물품의 용품)의 자격요건 및 등록

-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 4) 행정제재

- ① 선(기)용품공급자 및 선(기)내판매업자 등 기타 업종의 용역제공업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 ② 세관장은 관할구역내에서 영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① 내지 ③의 행정제재는 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에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등록 취소

- 가.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 허가, 지정, 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 제11조(행정제재) ~ 제13조

### 13 BWT물품의 B/L 합병



- BWT의 경우 여러 가지의 거래사양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B/L 합병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BWT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 일반수입화물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 수입화물의 적하목록상 수하인이 포워더로 지정된 경우에만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하인이 실제 화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B/L 합병이 가능한지요?  
☞ 수하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 SHIPPER가 상이하더라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SHIPPER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지요? 만약 다국적기업일 경우 국가는 상이하더라도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동일한 SHIPPER로 인정되는지요?  
☞ SHIPPER가 다르더라도 B/L합병은 가능합니다.  
☞ 다국적기업일 경우 국가가 다르면 다른 SHIPPER로 보아야 합니다.
- 일부 의견에 의하면 화물관리번호 중 동일한 MRN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화물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 화물관리번호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상 품명이 동일하여야만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동일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B/L 합병의 주체는 반드시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3의 수하인도 가능한지요? 반드시 B/L을 생성할 수 있는 포워더만 가능한지요?
  - ☞ B/L 합병의 주체는 화주입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사나 포워더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입시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와 B/L 합병을 수행하고자하는 포워더가 상이하더라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된다면 적하목록을 전송한 포워더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B/L 합병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워더에게 양도하는 증명에 의해 B/L 합병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 ☞ B/L 합병의 주체는 당해물품의 화주로서 포워더는 관련이 없습니다.
  
- 만약 3개의 건으로 반입된 건에 대해 포워더가 각각 상이하다면 이 경우에도 B/L합병이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상기 질문2와 마찬가지로 B/L 합병의 주체는 당해물품의 화주로서 포워더는 관련이 없습니다.
  
- 동일한 세관 관할에 동일한 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B/L합병이 가능한지요?
  - ☞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에 대해서만 B/L 합병이 가능합니다.
  
- B/L 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세청의 BWT합병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 ☞ 세관을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선사 또는 포워더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B/L 분할·합병)

## 14 전자공매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공매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 및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알려 주시면 공매에 대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답변

- 보세화물 장치기간 경과물품(체화)의 공매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및 공매 참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매요령 및 공매물품 목록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공매공고(체화공고안내/공매공고) 또는 각 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각 세관 세관계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물품은 해당세관에서 공람(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세관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공람시간:09:00-17:00까지 공람함. 신분증 지참)
- 공매입찰 등은 관세청 포털사이트([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업무처리> 체화 공매전자입찰)에서 진행이 되므로 먼저 포털사이트인 UNI-PAS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2. UNI-PASS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사용방법

- ① 공인인증서 발급(인터넷 웹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송/수신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암호/복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
  -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 발급절차 : 인증서 사용목적 및 용도 결정 → 발급공인인증기관 선정

→ 인증서 발급서류 준비→ 공인인증기관 방문 또는  
방문요청→ 인증서 발급

- 신청서류(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인증기관별 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공인인증서비스 신청 양식내),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시 원본 지참), 공인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명서류(미리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 공인인증서 사용목적에 결정하는 단계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어떤 웹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함

예1)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이 저렴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예2)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주업무로 사용하고, 인터넷뱅킹, 기타 전자정부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하나의 공인인증서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

## ② UNI-PASS([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접속 환경을 구성

-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때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되며,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청 헬프데스크(1544-1285)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거나 원격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③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

- 이용신청서 작성 : 신고인(대표자) 및 업체정보 등록,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 : 세관에서 승인처리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 문서함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됨
-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및 정보등록(이용신청서 작성시 등록한 경우는 생략)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정보를 인터넷 통관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에 등록하며,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공매 입찰요령

- 입찰참가자격은 세무서장 발행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가자격은 공매목록을 보시면 물품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매물품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공매물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행을 조건으로 낙찰 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전 공매조건을 해당세관이 제시한 기간(낙찰일로부터 30일)내에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매각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입찰 때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예정가격은 제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최초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업무처리>>체화공매전자입찰>>카테 고리검색>>입찰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10조(매각방법)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매각처분의 대상) ~ 제30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 15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장기체화물품(햄)을 세관장 직권으로 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 없어진 물품
  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5.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7.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 화주 등에게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 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4항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폐기명령대상 등)

## 16 보세창고 반입정지



- 보세창고 반입정지 물품에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모두 다 해당 되는지요?

### 답변

- 질의 내용과 같이 영업용 창고의 반입정지 기간에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역시 반입정지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및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

### ※ 유의사항

-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에 관한 다음의 질의회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에서 반출입신고 대상물품을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6월의 범위안에서 해당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7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잉여물품 관련



- 보세공장에서 해외 PJT공급용으로 발주된 물품 제작에 있어 발주 취소로 인하여 생산반제품, 완제품, 원상태자재 등이 발생한 경우 반제품과 완제품도 잉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반제품, 완제품을 잉여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정상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 답변

- “잉여물품”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을 포함합니다.
- 운영인은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에서의 제품 등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은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시달(2002.1.24)**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스크랩 포함)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의 평가방법이 세관별로 상이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평가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1. 통관유형

- 1유형 : 국내구매자(보세공장 운영인이 아닌 제3자)가 통관

- 2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통관(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통관)
- 3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통관(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통관한 후 구매자가 결정되면 판매)

## 2. 평가방법

### 가. 1유형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의 물품반입은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인 원래 의미의 “수출”은 아니나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때 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도 동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가격이 됨.

### 나. 2유형

-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 수입통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구매자는 형식적 수입자가 아닌 실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인 것임
- 따라서 이들간의 거래가격이 동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다만, 동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운영인이 수입통관 시 부담하는 관세는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음

### 다. 3유형

- 3유형의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 사실상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제2방법 이하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다만, 제4방법 적용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인(제조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며, 보세공장에서 국내 반입되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일반경비와 관세는 공제하여야 함.

### 라.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스크랩) 평가시 유의사항

- 잉여물품의 경우 본래의 제조 목적물이 아닌 부산물이며 보세공장

-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이 사실상의 국내거래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1방법 적용시 관세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각종 배제요건 및 동법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2·3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적용이 곤란할 경우 제4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은 최종 수요자까지의 거래단계별 전매가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함
  - 또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 곤란 등으로 제4방법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5방법과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시달(2002.1.24)

## 18 보세공장 반입물품 반출 절차



- 보세공장 운영중이며 국내업체에 수출용(구매확인서 발급) 자재로 발주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는 당사에 물품을 납품 후 환급대상 반입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물품을 반출할 때 내국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7항에 의거 반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에 의거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에서 환급고시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의 반입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 신청 절차에 따라 반입 즉시 보세사 등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것입니다.
- 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반입절차를 생략하고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내국물품으로 반입한 물품의 반출절차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제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장

## 19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품 절차



- 보세공장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반입된 물품이 불량이 나서 다시 반품을 하고자 합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내의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급받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출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제2항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 20 보세공장 반입 포장용품 잉여물품 처리 절차



- WOODEN 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 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포장용품인 경우 잉여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잉여물품이 사용신고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포장재로서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서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 완료보고는 생략합니다.
- 따라서, WOODENPACKING으로 포장되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WOODENPACKING도 잉여물품에 해당하는 포장용품으로 볼수있으며 반복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용인 경우 해당원재료의 사용신고 수리으로써 폐기처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폐기완료보고를 생략하므로 달리 잉여물품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제7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3항

## 21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구비 여부



-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와 마찬가지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신고서는 수입신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식물방역법」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 「약사법」 (오·남용우려 의약품 한정)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0. 「통신비밀보호법」
  11.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12. 「방위사업법」

13. 국민건강보호·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 구비 확인절차는 생략합니다.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2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A E O**



## 1 AEO 제도



○ AEO란 무엇인가요?

### 답변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55조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 화물관리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AEO 공인의 혜택



-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답변

- AEO제도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관에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최근 자국 AEO 공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업체에게 AEO 공인을 요구하고 있는 등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의 상호인정 협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공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검사비용 축소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다른 형태의 심사 면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AAA 등급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통관절차 등의 특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업체의 등급에 따라 혜택을 차등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경우에는 [별표 3]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AEO에 해당되어야 하며 통관업체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공급망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정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3 AEO 공인신청 방법



-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 AEO 공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 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하며, 신청에 따라 AEO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기준에 따라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AEO 공인절차는 우선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수출입안전 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인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공인기준의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참고)  
※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AEO 공인신청 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심사 관련문의기관 : AEO 진흥협회 / [www.aeo.or.kr](http://www.aeo.or.kr))
- AEO 공인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사신청서**(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및 다음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 제외)
2.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5.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6.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총괄책임자는 제외)
7.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영문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8. 최근 2년이내 관세법 제115조(과세조사의 결과 통지)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

- 공인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unipass.customs.go.kr](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적용대상), 제4조(공인기준), 제6조(공인신청), 제7조의2(예비심사), 별표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 4 AEO 공인 신청서류 보완기간

- AEO 공인신청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심사요건을 확인하는데 곤란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관세청은 보완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합니다.

※ 보완기간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심사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전체 보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서류심사)

## 5 AEO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 AEO 공인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공인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내역(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총괄책임자 제외)
-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종합심사를 신청한 후 종합심사가 지연되거나, 실시 중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간주하되, 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유효기간), 제19조(종합심사)

## 6 사후관리

- AEO 공인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답변

- 사후관리란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정기 자체평가 실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경우 정산보고, 관세청장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 7 AEO 관리책임자 역할 및 교육 이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여야 하나요?

### 답변

- 관리책임자는 ①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② 관련 직원 교육, ③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④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인 전 교육 :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이수
    - \* 공인 전의 경우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
  2. 공인 후 교육 :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이수(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 후 1년 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후 180일 이내에 교육이수)

### ※ 교육내용

-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 나.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 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 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 마.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6조(관리책임자),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8 변동사항 보고



○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변동사항 보고)

## 9 정기 자체평가 실시

- AEO 공인인증을 받은 후 정기 자체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
- 자체평가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 제외)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관세사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3. 보세사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 10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무엇이면 어떤 사항을 보고하나요?

## 답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받아 정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에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합니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2,3,4(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정산보고의 확인),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 11 상호인정약정(MRA)



- 상호인정약정이 무엇인가요?

### 답변

-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이란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AEO제도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AEO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제도의 연계를 위해 상호인정약정(MRA)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체결절차: ①공인기준 비교 → ②상호방문 합동심사→ ③ 운영절차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 총 13개의 MRA를 체결하여 AEO제도를 선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상호인정약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기

타



# SOFA, 파르네

## 1 주한미군에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 주한미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답변

-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용 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자가 수입하는 주한미군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주한미군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입신고시 **주한미군 계약관이 서명한 “주한미군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JK Form A)”**와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통관된 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완료 증명서(JK Form B)”**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 완료증명서(JK Form B)”**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합니다.

###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통관과 면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SOFA특례법) 제6조(관세 등 제세의 추징)

##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우편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까?

### 답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私用)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 ②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 ③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APO)**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통관과 면세)

###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 SOFA협정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답변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SOFA협정 제15조 제1항)는 제외합니다. SOFA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②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1조(정의)

## 4 주한미군 이사물품의 통관



- 한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미군가족 이사물품의 면세통관 여부 및 통관방법은?

### 답변

-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SOFA대상자)이 대한민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하는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합리적 양의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SOFA대상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를 미군통관장교에 제출하여 ‘**미군용수입신고서(일반세관용 수입신고서), EK95서식**’에 통관장교의 서명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제9조(통관과 면세)

## 5 SOFA 면세차량의 양도



- SOFA협정에 의해 면세로 수입한 차량(SOFA면세차량)을 비면세권자인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면세권자의 자격 및 양도 가능한 차량은?

## 답변

- **SOFA면세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및 통관지세관장의 130일 제한 아래의 예외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운행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한, 양도할 수 있는 SOFA면세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합니다. 다만, 전역·전출의 사유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으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과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의 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 양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기준)

## 6 SOFA 면세차량의 양수자



- SOFA협정에 의해 면세로 수입한 차량(SOFA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답변

- SOFA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① 관세법, 기타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 ② 관세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 ③ 관세법 제9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교회, 사원 등)
  - ④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 ⑥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 ⑦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동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 ⑧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⑨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만 해당)
- 또한, SOFA면세차량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개인은 1대에 한하여 양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신고) 및 제4조(승인기준), 제5조(양도, 양수 대수 제한)

## 7 A.T.A. Carnet란?



- A.T.A. Carnet란 무엇입니까?

## 답변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시 통관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 **A.T.A. Carnet**는 ATA협약(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 수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즉, **까르네증서(A.T.A. Carnet)**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및 담보금 보증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까르네증서는 특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제5조(보증단체)

※ 유의사항

- A.T.A. Carnet로 통관할 수 있는 물품 및 가입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동 고시 별표 1(A.T.A협약 적용국가 및 보증단체)

## 8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 답변

-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음 각 협약 내용의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제8조(일시수입대상 물품)

※ 유의(참고)사항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a) :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

## 9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수출기간은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참고사항(A.T.A. 협약)

- 제4조 제1항 : 발급단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까르네를 발급하지 못한다.
- 제12조 제1항 :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사인의 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 될 수 없을 때,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재수출기간)

## 10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까? 반드시 재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까?

### 답변

- A.T.A. Carnet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부분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에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신청(승인)서”(세관비치)를 재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재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제17조(적재관리)

## 11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의 사용



- A.T.A. Carnet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용도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답변

- 용도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A.T.A.까르네 물품 용도의 사용신청(승인)서”(별지2호 서식)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A.T.A. Carnet(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용도의 사용승인), 제20조(납세의무자)

## 12 해외로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 여행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해외에 가져갔다가, 여행이 끝난 뒤 다시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 「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수출입하는 경우,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해외 일시반출시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해외에서 여행이 끝난 후 자동차를 한국으로 재반입시, 재수입신고는 수출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출신고인(반출인)은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22조(신고인), 제23조(신고시제출서류),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 13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통관



-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요?

#### 답변

- 「**도로교통에관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수출입하는 경우,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반입시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 제1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운행표의 교부·회수에 관한 업무 대행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국내운행시의 사고에 대한 대비)
  -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일시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입신고인(반입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자.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취업·취학·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 해당 일시수입하는 차량은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에 의해 정해진 기간에 재수출을 해야 하며,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4조(신고의 요건), 제5조(신고인), 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제9조(재수출기간과 기간의 연장)

**도로교통에 관한협약 체결국**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아 시 아	유 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Bangladesh	Albania	Algeria	Argentina	Australia
China	Austria	Benin	Barbados	Fiji
Georgia	Belgium	Botswana	Canada	Haiti
India	Bulgar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ile	New Zealand
Israel	Cyprus	Congo	Cuba	
Japan	Czech Republic	Côte d'Ivoire	Dominican Republic	
Jordan	Denmark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cuador	
Kyrgyzstan	Finland	Egypt	Guatema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rance	Ghana	Jamaica	
Lebanon	Greece	Lesotho	Paraguay	
Malaysia	Holy See	Madagascar	Peru	
Papua New Guinea	Hungary	Malawi	United States of America	
Philippines	Iceland	Mali	Venezuela	
Republic of Korea	Ireland	Morocco	Trinidad and Tobago	
Singapore	Italy	Namibia		
Sri Lanka	Luxembourg	Niger		
Syrian Arab Republic	Malta	Rwanda		
Thailand	Monaco	Senegal		
	Montenegro			
Turkey	Netherlands	Sierra Leone		
Combodia	Norway	South Africa		
United Arab Emirates	Poland	Togo		
	Portugal	Tunisia		
	Romania	Uganda		
	Russian Federation	Zimbabwe		
	San Marino			
	Serbia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Yugoslavi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외환 신고

## 1 외화 휴대 반출

-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금액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에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동법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 2 해외 유학생 송금



-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유학경비를 국내에서 해외로 가지고 갈 때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유학경비 송금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및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유학경비 휴대반출

- 해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해외유학생이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4-5조 제2항(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제5-11조제1항 제2호(신고 등)

## 3 수출대금의 회수

- 본사가 수출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나요?

## 답변

- 채권회수의무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 동 기한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동 기한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 기한 연장을 받거나 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 즉,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 ②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릅니다.

○ 벌 칙

- 수출입업자가 위에서 설명한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제29조(벌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1항(채권의 회수)

## 4 수입대금 휴대반출 지급



-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이라 수입대금을 휴대하여 출국한 후 외국현지에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 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에 해당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위반금액(5억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

## 5 제3자 지급 등



- 수출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서 받지 않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5-1호 서식)
  - 사유서
  -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 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 그러나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2014.10.30. 개정)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분), 제30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신고 등)

##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



-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고국에 가지고 있는 국내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답변

-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국내예금 ·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그리고 재외동포가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국내예금 ·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재외동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거래 절차 등), 제9장 제1절(해외직접투자 절차) 및 제4절(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절차)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위의 재외동포의 국내재산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휴대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15조(지급절차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제5-11조(신고 등)

## 7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외화반입 신고절차



- DHL이나 Fedex같은 특송업체나 우편으로 돈을 반입하였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특송 또는 우편을 통하여 반입한 지급수단은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만 국내은행에 예금·환전**을하실 수 있습니다.
  - 특송으로 수취한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기표지 상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수취 후 필요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과 귀금속을 제외)
- 외국환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취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취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입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29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 8 환전영업자 등록 절차

- 환전영업자의 관리 및 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등록자도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새롭게 환전영업자의 업무가 변경된 점이 있나요?

### 답변

- 2016. 4. 1.부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가 관세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등록한 내역이 관세청으로 이관되어, 기존에 등록증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새롭게 관세청에서 등록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등록필증을 새로 발급받고자하면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관할 세관장에게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 등록필증을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 감독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환전영업자의 보고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되었으면, 환전장부 사본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 보고서 양식 또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하되,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권장 보고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동법 시행령 제35조(검사),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기 타

##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출입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인터넷, 노트북, 모바일은 웹(Web)/앱(App)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방문을 통해 수작업 발급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 이용시 시스템 에러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1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2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통계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입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조회”메뉴에서 관세청이 공표하는 통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입무역통계 코너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종류는
  1. 수출입 통계
    - 수출입 총괄
    - 품목별 수출입실적
    - 성질별 수출입실적
    - 국가적 수출입실적
    - 대륙별 무역통계
    - 경제권별 무역통계 등
  2. 남북 교역 통계
    - 반출입총괄 등
  3. 수출입 화물통계
    - 수출입 총괄
    - 적재항별 수출입 실적
    - 컨테이너 단위별 실적 등
  4. 지역별 무역통계
    - 성질별 수출입실적(시도)등

5. 테마별 무역통계

- FTA 관련통계
- 10대 수출입품목 등

- 통계는 기본적으로 연도별, 월별 기준으로 작성되며, 해당 기간의 국가별 또는 품목별 상세통계 조회도 가능합니다.
- 특정 품목에 대한 통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당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한 후 해당 메뉴에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무역통계연보 등 통계책자 열람 및 구입가능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자료실 :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3층(042-481-7890)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본부세관 자료실
  - 대학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월보 및 연보 구입 가능)
  -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02-3416-5115~8, Fax 02-540-7438) 으로부터 통계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수출입통계 발표는 익월 15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무역통계작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무역통계의 공표)

### 3 개별업체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



- 다른 업체의 수입단가 및 수입량 또는 특정물품의 국내 수입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 자료는 통계목적으로 업체별 수출입 신고내역 및 신고단가 등은 **개별업체의 영업보호**를 위하여 통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특정물품의 수입업체 명단은 관세청 통계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115~8)**에서 자료제공 여부 및 수수료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수입업체의 연락처 및 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등 일부 기본적인 통계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결제형태별 수출입 등 기타 통계 및 자사 수출입실적 교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대행(통계교부 수수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통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세관 조사총괄과에서 공문에 의해 협조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행정정보의 공표 등)

## 4 권리구제 신청절차

- 세관의 추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세관의 추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인터넷통관 포탈서비스로도 접수 가능)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해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제출받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6조(대리인)

## 5 관세사시험



- 관세사가 뭔가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또 관세사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세사사무원 자격증이라는 것도 따고 싶은데 어떻게 따는 건지요?

### 답변

- 관세사제도란 무역 및 통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화주가 믿고 통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세사시험이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관세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어느 자격시험이나 그러하듯이 시험공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설학원이 영업을 하게 되며, 국가는 사설학원의 이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가 사설학원을 소개해 줄 수는 없으며 서울 시내 및 부산 등 다수의 학원이 관세사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자격 시험관련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동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홈페이지>자격시험(큐넷)바로가기 또는 [www.q-net.or.kr](http://www.q-net.or.kr) > 전문자격시험>관세사를 통해 시험공고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 공단에서는 관세사시험을 포함하여 내년도 전체 시험일정을 12월 중에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1,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절대 평가로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2차 시험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합격자가 공고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최소합격인원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므로 최소합격인원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 ○ 관세사시험 과목

#### <제1차 시험과목>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 무역영어
3.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4.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

#### <제2차 시험과목>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 관세사사무원의 채용,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회(연수 및 교육담당, 02-547-971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 제6조(관세사시험), 동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6 관세직 채용



- 세관원과 입국심사원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세관공무원이 되면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세관공무원은 관세청 소속으로** 주요 공항만에서는 여행자휴대품(물품) 검사를 하고, **입국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주요 공항만에서는 출입국여행자 심사를 합니다.
- 세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관세직에 응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2016년도 7급 선발과목을 보면 필수 7과목으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고, 9급 선발과목을 보면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총5과목입니다.
-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연초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매년도 1월초에 발표하는 공고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채용시험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는 자격증 시험으로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관세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관세청 조직은 **본청,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세관관서(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소속기관, 세관관서를 달리하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관세직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관세직으로 부처 배정을 하고, 관세청에서 각 세관 등 근무기관 지정을 하는데, 세관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므로 전국의 어느 세관에도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급적 연고지 등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만, 인사 발령은 기본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곳에 배치되므로 반드시 희망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제26조~제45조)

## 7 탐지견 관리요원 채용



- 공항에서 마약견 관리 업무를 하고 싶은데요, 공항 등에서 마약을 탐지하는 개(마약견)들의 관리는 어떤 분(경찰, 일반 공무원, 마약 전문가)들이 하나요?

### 답변

- 마약탐지견 관리는 우리 관세청소속 공무원인 탐지견관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 탐지견관리 요원은 결원 발생시 충원되는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각 세관별로 결원 발생시 수시로 채용하며, 당해 세관 인사담당부서에서 공고하며, 인사 채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채용 관련 공고는 당해세관에서 공지하는 것 외에 “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에 공지됩니다.
- 참고로,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11-10호(2011.3.28) ‘2011년도 제1회 별정직 공무원(탐지견관리요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고’에서 「별정직 8급 상당 (탐지견 관리요원)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2등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3등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관, 경찰, 군,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견관리 또는 견훈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축산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세관, 경찰, 군,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견관리 또는 견훈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세관 탐지견 관련 9급상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고 제2008-1호 ‘별정직공무원(탐지견관리요원) 특별채용 공고’에서 「**별정직 7급 상당(탐지견 관리요원)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1등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세관, 경찰, 군,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견관리 또는 견훈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2등급이상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세관, 경찰, 군,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견관리 또는 견훈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축산대학(학과)을 졸업하거나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세관 탐지견 관련 8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시험의 방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절차)

## 8 해양수산직 채용



- 관세청의 해양수산직 직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요건이 있는지요? 합격하면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를 받는지요?

### 답변

- 해양수산직 채용은 매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해양수산직 결원 발생에 따른 관세청 공고에 따라 채용하게 됩니다.
- 참고로, 응시자격요건으로 2016. 09. 01. 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해당 생년월일 : '98.12.31이전 출생자)
  - 해양수산직 9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
    - 항해직류 : 항해사(1~6급) 자격증소지자
    - 기관직류 : 기관사(1~6급) 자격증소지자
- 시험방법
  - 1.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전공과목(1) : 항해(항해직류에 한함), 선박기관(기관직류에 한함)
      - 공통과목(2) : 영어, 관세법개론( 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 각 과목 100점씩 300점 만점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득점 60점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소수점 올림)까지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2.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
-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3. 4차시험 : 면접시험

- 기타 시험절차나 가점 여부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공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해양수산직공무원의인사에관한시행세칙 제3조(결원의 적기보충), 제4조(신규 채용), 제5조(자격증의 구분), 제8조(시험의 방법)

## 9 외국 관세율



○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상대국 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 외국의 관세율은 해당국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외국 관세청 사이트는 “관세청홈페이지 HOME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외국관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국의 관세율과 관련한 기본자료를 저희 관세청 홈페이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면,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세계HS 정보시스템 > 관세율표 > 외국국기 클릭하여 외국(일부국가)의 관세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자료실(02-3460-7405, 7114)을 이용하시면 품목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HS code (6자리)를 이용하여 해당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홈페이지(<http://www.globalwindow.org>)>> 무역자료실 >>관세율 FAX서비스 >>서비스신청
  
- 다만, KOTRA에서 동서비스를 이용하여 Fax로 받으시는 자료는 외국의 관세율표 책자를 Copy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 관세율표 발간 이후로 해당국가의 세율이 변경되었다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무역자료실에서 안내하는 주요국의 수입관세율은 영문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10 각 국가별 여행자통관정보 등 외국세관 통관제도



-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식품을 가져가도 될까요? 외국의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 등 외국통관제도는 해당국 세관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외국 관세청 사이트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외국관세청
- 참고로, 해외 주요국가의 일반적인 여행자통관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휴대품통관안내
- 세계 각국의 수출입통관, 과세제도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곤란하여 고객님의 문의하신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 등 외국 통관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제주 면세점(국내선)



- 제주도 여행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인당 구입한도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구입처는 제주도내 어디서 하는지와 제주도 이외 지방에서 구입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 답변

- 구매한도
  - 1인 1회 구매 한도액 : 600\$(미화기준, 주류, 담배 포함)
  - 연간 구매 회수 : 연도별 6회
  - 주류 : 1인 1회 구매시 1병
  - 담배 : 1인 1회 구매시 10갑이내

※ 만19세 미만자는 술,담배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제주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악세사리 등
- 이용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민 포함)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탑승권 제시

※ 만 19세미만자 면세점 이용시 신분확인 방법

  - 국가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을 통한 신분확인
  - 신분증 미소지자: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 구매자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간 면세점의 이용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 이용시 주의 사항
  - JDC 면세점은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발장 밖으로 면세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면세물품의 종류), 제15조(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제16조(면세물품의 판매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 12 세관 근무시간



- 근로자의 날 관세행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공휴일에도 통관업무가 진행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복무규정상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과 같이 정상근무**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같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세관의 개청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 (09:00~18:00)**이며,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이지만 수출입통관업무 지원을 위해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득이 공휴일 등 개청시간외에 수출입통관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관세법 제321조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동법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 13 직원 조회



○ 세관에 근무한다는데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

## 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현직 관세청 직원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조직및직원안내 > 직원안내
- 우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세관에 재직중이신 분의 근무지와 연락처만을 보유하고 있어 현직에 계신분에 대한 연락처만 조회되고 퇴직한 분 조회가 안됩니다.
- 인사관리담당관실에서도 퇴직한 직원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보관중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면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전직 세관 직원 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관세무역개발원(02-3416-51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UNI-PASS 이용



- UNI-PASS가 뭔가요? UNI-PASS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UNI-PASS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인터넷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UNI-PAS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세관별 담당부서는 통관포탈>고객지원>이용안내>이용신청처리부서에 게시되어 있음)
- 통관포탈을 통해 제공되는 통관포탈서비스는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관세행정 민원신청 서비스를 비롯하여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조회 및 전송 서비스,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발급 서비스, 화물진행 정보, 관세행정사전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체화물품 전자입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UNI-PASS 이용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인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UNI-PASS 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수하물 기내 반입 허용 및 보안검색



- 해외여행을 갈 때 화장품 등 액체 기내용 가방으로 반입이 가능한가요? 액체는 전혀 반입이 안 되는 건가요?

## 답변

- 액체류 등의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한도는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용량으로 승객이 1리터(L) 규격의 Zip-lock 투명 비닐봉투 안에 용기를 보관하셔야 하며 투명 비닐 봉투는 닫혀있어야 합니다.
- 출국시 절차는 “체크인카운터에서의 탑승수속 > 세관신고 > 보안검색 > 출국심사”의 절차로 진행되며, 세관신고후의 보안검색은 세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내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규정도 세관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 기내 반입 허용 여부나 출국시 보안검색 관련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관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화장품 등 액체화물 기내 휴대 반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공사 보안검색팀(032-741-4736, 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or.kr) > 고객광장 > 자료실 > 공항소식”에 “2014.1.1부터 변경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리펀드

○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환급을 해준다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답변

-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급절차는 외국인여행객이 출국시 면세물품과 “물품 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제시**하여 반출확인 요청하고, 세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와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확인서에 반출확인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하면, 출국장내 입점된 환급창구운영업자에게 세관에서 반출확인 날인된 판매확인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출국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인관광객들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외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이 구입한 면세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구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하며
  - 반출 방법에는 휴대 반출하는 경우와 우편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 17 관세사 개업



- 관세사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회장에게 등록하고, **개업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세사의 영업형태** :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관세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무소에 참여
  - 관세사법인에 사원으로 참여
  - 통관취급법인에 채용
  - 개인관세사 또는 관세사법인에 채용
- **관세사의 등록** :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대상자는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의 개업신고 등** :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업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하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통관업을 수행하는 사무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세사는 개업신고필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관세사회장은 개업 신고한 관세사에 대하여 개업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명의대여, 지입식운영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세사 사무소의 명칭** : 관세사무소 명칭으로 이미 사용중인 명칭은 제3자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세사사무소의 명칭과 표기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사무소 형태별로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 관세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1인당 1천만원 상당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에의 가입
  -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증
-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거나, 한국관세사회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청소개 > 관세사시험 > 관세사제도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관세사법, 관세사법시행령, 관세사법시행규칙,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관세사법 제7조(등록), 제9조(사무소의 설치등), 제10조(개업신고)  
 관세사법시행령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제17조(개업신고), 19조(합동 사무소의 설치)  
 관세사의 직무수행에관한고시 제6조(등록), 제8조(개업신고)

## 18 여권 등 물품 분실



- 여권과 디카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일단 고객님의 물품이 세관에 습득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실 032-722-4523, 4553
- 입국장내에서 분실하신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 내에서 분실하신 거라면 인천공항공사 유실물관리소에 습득물로 접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아시아나 유실물센터: 032-744-2205, 외국 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에서는 습득물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 습득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습득물조회”, “유실물신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 HOME([www.airport.or.kr](http://www.airport.or.kr)) > 고객센터 > 유실물관리소 > 습득물조회

## 19 오류점수



- 수출입신고시 관세사대행으로 통관 진행함에 있어 관세사든 회사든 신고를 잘못하여 정정하는 경우 벌점제가 있는 것을 본것 같은데, 관세청이나 세관사이트에 벌점제와 관련된 제도 시행 및 벌점이 얼마인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답변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는 관할지세관장이 전월 중 당해 신고인 또는 화주가 전국 세관에서 발생시킨 오류를 매 익월 5일까지 해당 신고인의 전자사서함에 EDI전자문서로 전송 통보하며,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해 **관련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
-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신고인 또는 화주는 통보를 받은 달의 15일 또는 통보를 받은 달이 속하는 분기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게 오류내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신고 오류제도의 벌점제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 동고시 제8조에 근거하여 오류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며 제9조에 의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 오류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산정내역 및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각 세관 오류점수 담당 또는 통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5조(오류발생의 통보), 제6조(오류점수의 이의신청 및 확정),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 20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 인터넷상에서 수출입 통관이나 관세 관련하여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각종 법령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해당란을 클릭 후 검색어 검색
- 과세환율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환율정보 > 주간환율
  - 관세청 홈페이지 > 오른쪽 중단에 관세 환율정보 클릭 > MORE 클릭
- 과세가격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관세평가
  - 관세평가예규 : 관세평가분류원(<http://cvnci.customs.go.kr>)> 관세평가사례
- 기본적인 수출입통관절차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수입/수출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자주찾는 관세행정
- 수출입요건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
- 개인용품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오른쪽 중단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 세액조회 Click!!
  
- 관세청홈페이지 상의 외화관련 사항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조사/감시 > 외환범죄조사
  
- UNI-PASS 사용자 등록 및 인증기관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고객지원
  
- 수출이행내역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수출이행내역 조회
  
- 수출입통계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 조회
  
- 원산지 증명서 신청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증명서발급 > > FTA 원산지증명서
  
-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yestrade.go.kr)
  
- UNI-PASS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
  
- 민원업무서식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별표/서식
  - UNI-PASS > 고객지원 > 자료실 > 민원업무서식
  
- 간이정액환급율표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율(세번부호별 전체년도 조회)

○ 관세환급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자주찾는 관세행정

○ 환급금지급은행 코드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관세환급 절차 및 신청서작성 > 환급금지급은행
- ※ 바로가기 <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Move.do>

○ 관세환급사례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관세환급사례
- ※ 예규, 지시, 지침 및 민원회신 등 게재됨

○ 관세사시험 공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관세사시험

○ 관세직 채용 관련 공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http://www.gosi.go.kr)) > 해당시험란

○ 탐지견 관리 요원 채용 관련 공지

-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해당 세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해양수산직 채용 관련 공지

-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해당 세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관련 공지

-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해당 세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외국관세청 사이트

- 관세청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 외국관세청

- 외국(일부국가)의 관세율
  -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HS 정보시스템 > 관세율 > 외국 국기 클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홈페이지(<http://www.globalwindow.org>)>> 무역자료실 >> 관세율 FAX서비스 >> 서비스신청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http://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직원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조직및직원안내 > 직원안내
  
- CRM 서비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고객지원센터 > CRM고객코너
  
- 습득물 조회 및 유실물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 > 고객센터 > 유실물관리소

부

록



□ 관세청 연락처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a href="http://call.customs.go.kr">http://call.customs.go.kr</a>	관세행정 상담전반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국번없이 125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HELP-DESK)	1544-1285	<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 세관신문고	080-512-2339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관세행정불만, 개선건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05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과세환율, 평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1과	042-714-7535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분류2과	042-714-7583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01~81, 84류)
관세평가분류원 분류3과	042-714-7556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82~83, 85~97류)
중앙관세분석소	055-792-7312~5	<a href="http://ccls.customs.go.kr">http://ccls.customs.go.kr</a>	분석, 과학기술지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6	<a href="http://post.customs.go.kr">http://post.customs.go.kr</a>	국제우편물통관
부산국제우편세관	055-783-7412	<a href="http://www.customs.go.kr/busanpostal">http://www.customs.go.kr/busanpostal</a>	국제우편물통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1~9	<a href="http://customs.go.kr/seoul">http://customs.go.kr/seoul</a>	이사물품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4	<a href="http://customs.go.kr/incheon">http://customs.go.kr/incheon</a>	이사물품

□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000	<a href="http://www.kctdi.or.kr">http://www.kctdi.or.kr</a>	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	02-701-1455~8	<a href="http://www.kcla.kr">http://www.kcla.kr</a>	, 보세운송업자 차량 등록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a href="http://www.kcba.or.kr">http://www.kcba.or.kr</a>	관세사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a href="http://www.kotra.or.kr">http://www.kotra.or.kr</a>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779, 5793	<a href="http://www.bok.or.kr">http://www.bok.or.kr</a>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a href="http://www.nts.go.kr">http://www.nts.go.kr</a>	내국세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a href="http://www.kita.net">http://www.kita.net</a>	무역업체초회, 무역상담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a href="http://www.patent.go.kr:7078">http://www.patent.go.kr:7078</a>	위조상품신고센터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	<a href="http://www.kipo.go.kr">http://www.kipo.go.kr</a>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a href="http://koreapost.go.kr/se/ipo">http://koreapost.go.kr/se/ipo</a>	우편물도착확인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a href="http://www.kosti.or.kr/">http://www.kosti.or.kr/</a>	전략물자 판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a href="http://www.sw.or.kr">http://www.sw.or.kr</a>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02-782-2263	<a href="http://www.kdvo.or.kr">http://www.kdvo.or.kr</a>	세관물품위탁판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1577-8863	<a href="http://www.komdi.or.kr">http://www.komdi.or.kr</a>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KTNET)	1566-2119	<a href="http://www.ktnet.co.kr">http://www.ktnet.co.kr</a>	전자통관서비스, 무역서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02-6050-3303	<a href="http://cert.korcham.net">http://cert.korcham.net</a>	원산지증명서, 까르네 발급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a href="http://www.naqs.go.kr">http://www.naqs.go.kr</a>	농산물원산지표시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9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5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원산지제도문의

#### □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a href="http://www.nier.go.kr">http://www.nier.go.kr</a>	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 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1577-0990	<a href="http://www.ts2020.kr">http://www.ts2020.kr</a>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0	<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형식승인, 형식신고 (건설기계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a href="http://www.qia.go.kr">http://www.qia.go.kr</a>	농수축산식품검역검사
국립수산물과학원	051-720-2114	<a href="http://www.nfrdi.re.kr">http://www.nfrdi.re.kr</a>	이식승인(수산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1577-1255	<a href="http://www.mfds.go.kr">http://www.mfds.go.kr</a>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 마약류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a href="http://www.kpta.or.kr">http://www.kpta.or.kr</a>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화장품법)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a href="http://www.kahpa.or.kr">http://www.kahpa.or.kr</a>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a href="http://www.kmdia.or.kr">http://www.kmdia.or.kr</a>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02-754-5921	<a href="http://www.kodda.co.kr">http://www.kodda.co.kr</a>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2-467-0350	<a href="http://www.medinet.or.kr">http://www.medinet.or.kr</a>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조사홍보팀)	02-761-1101, 1104	<a href="http://www.aerospace.or.kr">http://www.aerospace.or.kr</a>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한국석유공사	052-216-2114	<a href="http://www.knoc.co.kr">http://www.knoc.co.kr</a>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4177	<a href="http://www.keco.or.kr">http://www.keco.or.kr</a>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통일부 남북경협과	1577-1365 02-2100-5795	<a href="http://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a>	반출입승인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법률)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647	<a href="http://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a>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a href="http://www.kdia.or.kr">http://www.kdia.or.kr</a>	방위사업법 (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방위사업청	1577-1118 02-2079-6449, 6455 (수출진흥과)	<a href="http://www.dapa.go.kr/">http://www.dapa.go.kr/</a>	방위사업법 (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문화재청 공항감정관실	032-740-2921~2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36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a href="http://www.naas.go.kr">http://www.naas.go.kr</a>	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농협중앙회	02-2080-5114	<a href="http://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a>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a href="http://www.kofeed.org">http://www.kofeed.org</a>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종자협회	031-760-1620~1	<a href="http://www.kosaseed.or.kr">http://www.kosaseed.or.kr</a>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국번없이 110 044-201-1822	<a href="http://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a>	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45	<a href="http://www.kscia.or.kr">http://www.kscia.or.kr</a>	수입금납부, 수입확인서 (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 규제등에관한법률)
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1644-4544	<a href="http://www.kosha.or.kr">http://www.kosha.or.kr</a>	위험기계, 보호구검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방사선진흥협회	02-3490-7114	<a href="http://www.ri.or.kr">http://www.ri.or.kr</a>	원자력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5, 6755	<a href="http://www.kcma.or.kr">http://www.kcma.or.kr</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577-8866 044-201-7184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5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야생동식물보호법, CITES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이동 및처리에관한법률, 바젤협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a href="http://www.ktc.re.kr">http://www.ktc.re.kr</a>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031-644-7530	<a href="http://www.rra.go.kr">http://www.rra.go.kr</a>	정보통신기기형식인증, 무선 기기형식검정등록,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정보통신기본법, 전파법)
국가기술표준원	1381 043-870-5600	<a href="http://www.kats.go.kr">http://www.kats.go.kr</a>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품질 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91~5	<a href="http://www.kpec.or.kr">http://www.kpec.or.kr</a>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상물등급위원회	051-990-7200	<a href="http://www.kmrb.or.kr">http://www.kmrb.or.kr</a>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 에관한법률)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00	<a href="http://www.grb.or.kr">http://www.grb.or.kr</a>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세감면추천확인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a href="http://www.kocema.org">http://www.kocema.org</a>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02-565-2721~5	<a href="http://www.komma.org">http://www.komma.org</a>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8600	<a href="http://www.koami.or.kr">http://www.koami.or.kr</a>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4	<a href="http://www.ksia.or.kr">http://www.ksia.or.kr</a>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22	<a href="http://mosf.go.kr">http://mosf.go.kr</a>	감면, 반덤핑(44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14	<a href="http://www.koita.or.kr">http://www.koita.or.kr</a>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외교부	02-2100-2114	<a href="http://www.mofat.go.kr">http://www.mofat.go.kr</a>	외교관용품 확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4	<a href="http://mosf.go.kr">http://mosf.go.kr</a>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인베스트 코리아)	1600-7119	<a href="http://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a>	외국인투자촉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a href="http://www.mw.go.kr">http://www.mw.go.kr</a>	장애인용품(관세감면)
자동차항공과	044-203-4328	<a href="http://www.mke.go.kr">http://www.mke.go.kr</a>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7	<a href="http://www.mke.go.kr">http://www.mke.go.kr</a>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 □ 양허관세추천기관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a href="http://www.aiak.or.kr">http://www.aiak.or.kr</a>	종우, 종돈
대한양계협회	02-588-7651~4	<a href="http://www.poultry.or.kr">http://www.poultry.or.kr</a>	종계, 조란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a.or.kr">http://www.koreadia.or.kr</a>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유당
국립종자원	054-912-0119	<a href="http://www.seed.go.kr">http://www.seed.go.kr</a>	종자용감자,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조, 대두, 사료용근채류
한국과수종묘협회	041-575-5337	<a href="http://www.kkja.org">http://www.kkja.org</a>	종묘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114	<a href="http://www.nfcf.or.kr">http://www.nfcf.or.kr</a>	대추, 밤, 잣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064-739-5401	<a href="http://www.citrus-cheju.com">http://www.citrus-cheju.com</a>	오렌지, 감귤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2-9431		대두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www.milkreplacer.or.kr">http://www.milkreplacer.or.kr</a>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a href="http://www.kofeed.org">http://www.kofeed.org</a>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대두,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골분, 사료용근채류, 육분, 보조사료
대한잠사회	02-783-6071~5	<a href="http://ksa.silktopia.or.kr">http://ksa.silktopia.or.kr</a>	잠종, 뽕나무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누에고치,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a href="http://www.weaving.or.kr">http://www.weaving.or.kr</a>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a href="http://www.textra.or.kr">http://www.textra.or.kr</a>	생사
한국전분·당협회	031-440-9941		옥수수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농협중앙회	02-2080-5114	<a href="http://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a>	천연꿀, 고구마, 매니옥펠리트, 종자용호밀, 종자용귀리, 맥주맥,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수수, 맥아, 전분, 이눌린,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인조꿀, 참깨유박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기타서류, 오렌지, 감귤, 목차, 생강, 옥수수, 메밀,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대두,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a href="http://www.kpta.or.kr">http://www.kpta.or.kr</a>	옥수수, 매니옥전분, 밀전분, 변성전분등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a href="http://www.kcca.or.kr">http://www.kcca.or.kr</a>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a href="http://www.paper.or.kr">http://www.paper.or.kr</a>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 할당관세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한석유협회	02-3775-0520~5	<a href="http://www.petroleum.or.kr">http://www.petroleum.or.kr</a>	석유, 역청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00	<a href="http://www.kfpic.or.kr">http://www.kfpic.or.kr</a>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02-782-7880		폴리(락트산)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a href="http://www.weaving.or.kr">http://www.weaving.or.kr</a>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a href="http://www.textra.or.kr">http://www.textra.or.kr</a>	생사
한국철강협회	02-559-3500	<a href="http://www.kosa.or.kr">http://www.kosa.or.kr</a>	페로실리코망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	<a href="http://www.ksia.or.kr">http://www.ksia.or.kr</a>	동의박
한국비철금속협회	02-567-2313~4	<a href="http://www.nonferrous.or.kr">http://www.nonferrous.or.kr</a>	니켈분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www.milkreplacer.or.kr">http://www.milkreplacer.or.kr</a>	유장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유장, 귀리(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동물성 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12, 6414	<a href="http://www.kalia.or.kr">http://www.kalia.or.kr</a>	매니옥츨(주정용), 조주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a href="http://www.kofeed.org">http://www.kofeed.org</a>	매니옥 찧과 펠리트(사료용), 겔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농협중앙회	02-2080-5114	<a href="http://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a>	매니옥 칩과 펠리트(사료용), 호밀(녹비용), 맥주맥, 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밀전분, 맥아(맥주제조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콘협회	02-571-6082~3	<a href="http://www.kocac.org">http://www.kocac.org</a>	팝콘용 가공용 옥수수
한국곡물차재가공협동조합	02-2652-5166		가공용 옥수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a href="http://www.kpta.or.kr">http://www.kpta.or.kr</a>	옥수수전분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a href="http://www.paper.or.kr">http://www.paper.or.kr</a>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한국곡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a href="http://www.kcca.or.kr">http://www.kcca.or.kr</a>	옥수수전분
한국제분협회	02-777-9451	<a href="http://www.kofmia.org">www.kofmia.org</a>	밀(제분용)
한국전분·당협회	02-521-7741		가공용 옥수수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2-6300-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가공옥수수(콘그리츠제조용)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5-1618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a.or.kr">http://www.koreadia.or.kr</a>	유당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a href="http://www.kfia.or.kr">http://www.kfia.or.kr</a>	카세인 및 카세인유도체(커피크리머제조용)
한국비료공업협회	02-552-2811~2	<a href="http://www.fert-kfia.or.kr">http://www.fert-kfia.or.kr</a>	요소(비료 및 비료제조용)
한국작물보호협회	02-3474-1590~4	<a href="http://www.koreacpa.org">http://www.koreacpa.org</a>	농약원제

#### □ 한·아세안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강낭콩(기타용)
국립종자원	054-912-0114	<a href="http://www.seed.go.kr">http://www.seed.go.kr</a>	강낭콩(종자용)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04	<a href="http://www.kalia.or.kr">http://www.kalia.or.kr</a>	매니옥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a href="http://www.paper.or.kr">http://www.paper.or.kr</a>	매니옥전분
한국수산물무역협회	02-6300-8901	<a href="http://www.kfta.net">http://www.kfta.net</a>	새우, 새우살, 냉동갑오징어, 새우가공식품

한 · EFTA FTA할당추천기관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051-254-9011~5	<a href="http://www.sunmang-suhyup.co.kr">http://www.sunmang-suhyup.co.kr</a>	냉동고등어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스위스치즈

한 · 칠레FTA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유장, 기타채소, 맥더린, 자두

한 · EU FTA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오렌지, 맥주맥, 맥아,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a.or.kr">http://www.koreadia.or.kr</a>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milkreplacer.or.kr/">http://milkreplacer.or.kr/</a>	

한 · 미 FTA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 보리, 맥주맥, 맥아, 옥수수전분, 수삼, 백삼,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a.or.kr">http://www.koreadia.or.kr</a>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사료용 식물,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milkreplacer.or.kr/">http://milkreplacer.or.kr/</a>	

---

##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Ⅱ)

---

**발행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call.customs.go.kr>)

**기획·편집** : 김종덕(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김종철(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상담팀(강성희, 서현애, 이재원, 강정명,  
이상량, 조진주, 박진민)

**연락처** : (02) 3438-5113

※ 본 책자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